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698호(그2)

2021.7.21.(수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21-2014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정 공고	2
---	---

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-2014호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정 공고

「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7월 21일
서울특별시장

1. 개정이유

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코로나 19 장기화로 심화되는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지원방안을 신설함(안 제3조제2항제14호 및 안 별표 제1호다목).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참조:지역돌봄복지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돌봄복지과(전화: 02-2133-7374, FAX: 02-2133-0719, E-mail: choice777@seoul.go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